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55 발의연월일: 2020. 11. 18.

발 의 자:윤영석·강기윤·권명호

류성걸 • 박덕흠 • 서범수

서병수・유경준・이종배

정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·상표·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, 디자인심판은 특허·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.

첫째, 특허·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,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,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,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,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(안 제17조제1항).

둘째, 특허·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,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,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(안 제128

조제2항).

특허·상표·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.

법률 제 호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"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"을 "특허청장"으로 한다.

제128조의 제목 "(심판청구의 각하 등)"을 "(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"을 "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7조(기간의 연장 등) ① <u>특허</u> | 제17조(기간의 연장 등) ① <u>특허</u> |
|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 | <u>청장</u> |
| 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 | |
| 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 | |
| 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, 제 | |
| 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 | |
| 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| |
|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다 | |
| 만,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| |
|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| |
|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 | |
| 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| |
| 있다. |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128조(심판청구의 각하 등) ① | 제128조(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|
| (생 략) | <u>등)</u>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 | ② |
|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| |
| 에 보정을 하지 <u>아니하면 결정</u> | <u>아니하거나 보</u> |
| 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 | 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|
| 다. |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|
| | 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 |
| | 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|
| | |
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|------------|